

의안번호	제 304호
의결년월일	1995. 12. 7. (제 40회)

의결사항	면업전성 의결
------	------------



읍면간 경계변경관련 군의회 의견요청의 건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년월일	1995. 10. 9.

고성군의회의견서

편입대상	○ 삼산면 관곡리 - 고성읍 편입
편입명칭	○ 삼산면 관곡리 - 고성읍 관곡리

《 의 건 》

1. 편입여부 : 찬 성

초·중·고등학교 학구가 고성읍으로 학생들이 고성읍 소재지 학교에 통학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권 및 경제권이 고성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특히 관곡리에서 삼산면소재지까지 거리가 8km인 반면 고성읍까지는 3km로 교통편에서도 고성읍 쪽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며, 관곡리주민 대다수가 고성읍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임.

2. 편입명칭 : 찬 성

이·동 명칭이 관곡리로 불러온 이후 한번도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고유의 리 명칭을 지키고자 함.

1995년 12월 7일

고성군의회의장 정채웅



읍면간 경계변경관련 군의회 의견요청

의안번호	304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1995. 10. 9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삼산면 판곡리는 생활권, 경제권 및 초·중학교 학구가 고성읍 중심으로 되어있고, 고성읍 소재 각종 금융기관과 우체국등을 이용하는 등 행정구역이 삼산면에 속해 있는것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이 편입을 적극 희망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,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여
- 읍면간 경계변경 대상지역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경상남도에 건의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요청함.

2. 주요골자

- 삼산면 판곡리 → 고성읍 편입
- 대상지역 현황
 - . 세대및 인구 : 80세대 214명
 - . 면 적 : 4.12 km
 - . 법정리 : 1개리
 - . 필지수 : 총 1,713필지

3. 지역의견

가. 행정기관 의견

편입되는 지역	삼산면장	. 미편입 대다수 주민들이 면세가 약해진다는 여론이며 판곡리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편입을 신청하고 있어 편입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이 어려운 실정임
편입받는 지역	고성읍장	. 삼산면 판곡리 주민의 생활권이 고성읍에 가까운 이유로 고성읍 편입을 원한다면 읍민들이 반대할 사유가 없음

나. 주민의견

○ 편입되는 지역주민

- 면소재지와 의 지리적 여건, 학구변경, 일상생활권등의 이유로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등 적극적인 편입을 희망하고 있음.

○ 편입잔여지역 주민

- 삼산면민 전체가 시장이용등 생활권이 고성읍에 속해 있으며, 면사무소, 농협, 우체국등 면단위 관공서 이용면에서는 온라인등의 시행및 동일 노선으로 교통상 큰 불편이 없고, 지금까지의 정서등을 고려하여 편입을 원치않고 있는 실정임.

○ 편입받는 지역주민

- 고성읍 주변지역 발전확대등 편입을 긍정적으로 희망하고 있음.

4. 군 의 견

- 생활권과 경제권이 고성읍이 중심으로 되어있고 해당지역 주민이 고성읍 편입을 적극 희망하고 있어 삼산면 판곡리가 고성읍으로 편입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군의회 의견요청사항

- 경계변경 대상지역의 편입여부
- 경계변경 대상지역의 편입명칭

6. 덧붙임

- 읍면간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